

「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(개정) 입안계획서

1. 행정규칙명

- 「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(관세청 훈령 제2200호, 2022. 4. 0.)

2. 개정사유

- 심사행정 관련 자체 위원회·협의회 개편
-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
- 타 훈령에서 규정하는 중복 사항 정비

3. 주요 개정내용

법령 외 훈령으로 운영되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폐지

- 정보분석심의회 폐지 및 이에 따른 관련 업무절차 신설(제14조)
- 정보분석심의회 폐지(제16조 삭제)
- 기업심사 실무협의회 폐지(제43조의2 삭제)
- 심사처분위원회 폐지 및 이에 따른 관련 업무처리 절차 신설(제38조, 제49조 ~ 제55조)

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신설

-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 및 심의 절차 신설(제31조)

원산지 표시 단속 관련 규정 정비

- 기업심사 분야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 삭제(제9조)
- 원산지 표시 위반 인지 시 통보절차 신설(제55조, 제63조)
-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·과징금 삭제(제60조, 제61조)

□ 기업심사 업무 수행 조직 현행화

- 심사부서에 서울세관 심사총괄1과 추가(제2조)

□ 기타 개정 사항

- 기업심사 업무 명확화(제9조)
- 감염병으로 인한 심사 중지 사유 신설(제36조)
- ‘어려운 용어 정비’에 따라 일부 용어 변경 및 용어와 조문의 의미 명확화
- 일부 별표·별지서식 번호오류 수정 및 관련 조항 정리 등

4.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5. 시행일자 : 2022. 4. .

6. 의견제출

- 제출처 : 관세청 기업심사과
- 담당자 : 윤성진 사무관(☎042-481-7656)
- 제출기한 : 2022. 4. 22.
- 제출방법 : E-mail(ysj0308@korea.kr), Fax(042-481-7989)
우편(35208,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기업심사과)